##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83 제안연월일: 2024. 9. 26.

제 안 자:이개호·김현정·어기구

이정문 • 박범계 • 박지원

위성곤 · 정진욱 · 박수현

서삼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 공사가 밝혀지면서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불안감과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항제2호 중 "1원"을 "2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과세대상) ① (생 략)	제146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	2			
트시(kWh)당 <u>1원</u>	<u>2원</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